

전지공장 화재사고 1년 후속 특별 현장점검, 호우·폭염 대응 점검도 병행

- 「특별 현장점검의 날」 운영 -

고용노동부(직무대행 차관 김민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지난해 6월 24일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전지공장 화재사고 1년을 맞아 6월 18일을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전국 전지 제조 사업장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한다.

또한 예방할 수 있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호우·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 취약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이번 「특별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안전보건공단 인력을 총동원하여 화재사고 고위험 전지 제조 사업장(430여개소)의 ▲비상구 등 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 및 대피훈련 실시, ▲화재 예방에 적합한 소화설비 설치, ▲작업장 내 위험물·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등에 대해 집중점검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호우·폭염 취약 사업장(호우 취약 6,300여 개소, 폭염 취약 60,000여 개소)에 대해서도 ▲침수·붕괴·감전·강풍 등 재해 유형별 산업재해 예방 핵심안전수칙(붙임 2) 준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등에 대한 안내·점검 등을 추진한다. 점검 과정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 작업중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 (폭염안전 5대 수칙) ①물, ②바람·그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④보냉장구, ⑤응급조치

김종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해 발생한 화성시 전지공장 화재사고와 같이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사업장에서도 화재 위험 요인을 자체적으로 재점검하고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는 한편,

“여름철 호우·폭염에 대비하여 고용노동부는 9월 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현장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붙임: 1.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을 위한 10대 안전수칙
 2. 호우·태풍 대비 사업장 조치사항 가이드
 3. 호우·태풍 대비 사업장 자율점검표
 4. 온열질환 예방지침
 5.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표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책임자	과 장	배영일 (044-202-8901)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이재화 (044-202-8914) 전재영 (044-202-8915)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화학사고예방과	책임자	과 장	손성길 (044-202-8965)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이재희 (044-202-8968) 김성도 (044-202-8967)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	책임자	팀 장	신욱균 (044-202-8890)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주무관	나상명 (044-202-8893) 박현건 (044-202-8891) 한진우 (044-202-8995)



• 본 자료는 전지(Battery)산업에서의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중독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관리 수칙을 담고 있습니다.
• 이러한 기본 관리 수칙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다른 산업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확인

01

취급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통해 유해·위험성, 취급방법,
응급조치요령 등을 확인합니다.



안전한 작업절차 마련

02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을 고려한
안전한 작업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실시합니다.



안전보건 교육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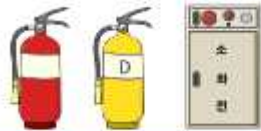
내·외국인 포함 모든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 안전작업절차, 안전수칙
준수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소화설비

04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는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을 갖춰 두어야 합니다.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을 위한

10대 수칙

비상구 확보 및 대피 훈련

05

위험물질을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에서는 주 출입구 외에
비상구를 설치·유지하고, 비상대피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화재·폭발 방지조치

06

물질에 따라서는 흡연, 불꽃 뿐만
아니라 정전기, 물과의 접촉, 충격에
의해서도 화재·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보관 및 저장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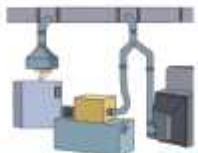
별도 장소에 보관하고, 작업장에는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합니다.
서로 반응할 수 있는 물질은 분리
보관해야 합니다.



작업장 환기

08

작업장내 유해물질 농도를 낮춰
건강을 보호하고, 화재·폭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작업환경 및 건강관리

09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작업장 내
화학물질 농도 등을 평가하고,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보호구 착용

10

화학물질의 종류에 적합한 보호구를
선택하여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공단





호우·태풍 대비

사업장 조치사항

공통사항

- 집중호우·태풍 예비 특보 발령지역 사업장은 **재택근무 실시** 및 **휴가** 적극 권고
- 호우·태풍에 의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 산안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호우·태풍 발생시부터 **기상특보 발령 상황 상시 모니터링**
* (기상청) 날씨누리 홈페이지, 기상특보 상황(날씨 > 기상특보 > 특보현황)

강풍

- ✔ 각종 시설물, 표지판, 자재 등 결속상태 점검
- ✔ 타워크레인 붐이 자유롭게 회전하도록 브레이크 해제(부러짐, 휨 방지)
- ✔ 강풍 시 철골조립, 양중작업 등 야외작업 중지

침수

- ✔ 배수로, 배수시설 사전점검 및 정비
- ✔ 지하구조물 등 침수 우려 장소 작업 중지
- ✔ 침수된 장소에 인원 및 차량 출입통제 (감전, 질식 위험 확인)

붕괴

- ✔ 옹벽, 석축 등 붕괴 우려 장소 사전점검
- ✔ 방수포, 흙막이 지보공 설치 등 붕괴예방조치 실시
- ✔ 붕괴매몰 발생 우려 장소에 출입통제 및 통행금지
- ✔ 산사태 우려 지역은 사전 대비태세 유지 (비탈면 유실 여부 점검, 근로자 대피계획 수립 등)

감전

- ✔ 충전부 및 배전반 등으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침수 우려 시 전기설비 이전 설치)
- ✔ 누전차단기 연결, 외함접지, 절연상태 점검 및 보수
- ✔ 침수 등 손상된 기계·설비 점검 시 사전 전원차단 조치


고용노동부



호우·태풍 대비

사업장 자율점검표

사업장명

소재지

점검자

점검일자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조치사항 및 개선계획
☒ 집중호우, 태풍 등에 따른 작업중지 등을 조치하고 있는가?		
☒ 호우·태풍 시 재난 위험장소(토사유실, 지반약화, 산사태 우려 등)가 있는지 사전 위험성평가 및 확인을 하였는가?		
☒ 강풍 시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등은 없는가?		
☒ 호우 시 침수 위험은 없는가? (배수구 점검 실시)		
☒ 침수 시 전기 감전의 위험은 없는가?		
☒ 침수 시 오물 유입 등 위생상 문제되는 곳은 없는가?		
☒ 침수 대비 양수기 등 긴급 복구 장비는 갖추어져 있는가?		
☒ 정전 대비 비상구호 용품(손전등, 양초 등)이 구비되었는가?		
☒ 자연재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및 비상 복구반을 구성·운영하고 있는가?		
☒ 도급·수급 사업장이 합동 점검 및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위험 상황 발생을 대비한 경보체계 및 대피방법 등을 논의하였는가?		
☒ 자연재난(산사태 포함)에 대한 매뉴얼 마련 및 주기적인 훈련을 실시하는가?		
☒ 호우·태풍 발생 후 복구 시 조치사항 등이 정해져 있는가?		

대응요령

급박한 산업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중지하고 대피

사업장 : _____

대표자 : _____

점검자 : _____

대표자 : _____

(서명)

(서명)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 '위기탈출 안전보건앱'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온열질환 예방조치

- ☑ 온·습도계 비치하여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
- ☑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알리기
- ☑ 5대 기본수칙 준수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
체감온도 계산기

5대 기본수칙 준수

물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바람·그늘	☑ 실내·옥외작업 시 (이동식)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
휴식	☑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쉼터) 설치 ☑ 체감온도 31℃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	☑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	☑ 온열질환자·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 신고 ☑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 신고 * 질병청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 알기

작업중지

- ☑ 사업주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5대 기본수칙 점검 및 개선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

▶ 온열질환 민감군

- ✔ 폭염작업 신규배치자
- ✔ 과거 온열질환 경력자
- ✔ 고령자, 고혈압·당뇨 등의 질환이 있는 자



▶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방법

- ✔ 폭염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주지
- ✔ 신규배치자 등에 대한 폭염작업 시간 단계적 증가
- ✔ 주기적으로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 ✔ 폭염작업 시간 단축, 휴식 시간 추가 배정

온열질환 응급조치 요령(질병관리청)

▶ 온열질환 증상

- ✔ 평소보다 높은 체온, 땀을 많이 흘림, 어지러움, 메스꺼움, 근육 경련, 의식 저하

▶ 온열질환 조치 요령

- ✔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세요
-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히세요
- ✔ 시원한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하세요 ※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수분섭취 절대 금지
- ✔ 휴식을 취하거나 의료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표	
1. [물] 시원한 물 자주 마시기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제공	☐ 적정 ☐ 개선 필요
2. [바람·그늘] 실내·옥외 작업장 온도 낮추기	
○ 실내·옥외작업 시 (이동식)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 적정 ☐ 개선 필요
○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	☐ 적정 ☐ 개선 필요
3. [휴식] 주기적으로 쉬기	
○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쉼터) 설치, (이동식)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시원한 물 비치	☐ 적정 ☐ 개선 필요
○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	☐ 적정 ☐ 개선 필요
○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 적정 ☐ 개선 필요
4. [보냉장구] 근로자 체온 낮추기	
○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 적정 ☐ 개선 필요
5. [응급조치] 119에 신고하기	
○ 온열질환자·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에 신고	☐ 적정 ☐ 개선 필요
○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 신고	☐ 적정 ☐ 개선 필요
6. 그 외 예방조치	
○ 작업장소의 체감온도를 알 수 있는 온습도계 비치	☐ 적정 ☐ 개선 필요
○ 온열질환 증상 및 예방방법, 응급조치 요령 교육	☐ 적정 ☐ 개선 필요
○ 체감온도를 측정하고 조치사항 기록·보관	☐ 적정 ☐ 개선 필요
○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계획 수립 * 신규배치자, 과거 온열질환 경력자, 고령자 등	☐ 적정 ☐ 개선 필요